

제2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 반 의 안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21 - 117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인구교육과)	1
2021 - 118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민원소통과)	7
2021 - 119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문화관광과)	11
2021 - 12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재 무 과)	15
2021 - 12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경제교통과)	23
2021 - 122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산 립 과)	33
2021 - 123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산 립 과)	39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의안 번호	2021 - 117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665,000천원
- 2022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천원)

사업기간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 타
2022년	665,000	665,000	665,000	-	-	665,000	-

- 사업내용
-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나. 부서의견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장학사업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
- 거창군의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 함으로써 거창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3. 관련법규 및 조례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 계 법 령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4조 삭제<2019.4.3.>

제5조 삭제<2019.4.3.>

제6조 삭제<2019.4.3.>

제7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재정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인력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인력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2019.4.3.>

부칙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부칙(조례 제2496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근거	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례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55-940-8812			
				홈페이지 : www.gcdream.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2005. 12. 27.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1.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0명		0명		0명		
인원 (‘21. 9.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거창군수		2018.7.19.~		
	상임이사	백○○	前 교장		2019.12.26.~2021.12.25.		
	비상임이사		정○○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2020.09.21. ~	
			조○○	거창군산림조합장		2020.12.24.~2022.12.23.	
			이○○	前)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장		2019.12.26.~2021.12.25.	
			이○○	前) 거창교육지원청 과장		2019.12.26.~2021.12.25.	
			구○○	前)(사)한농연 거창군연합회장		2019.12.26.~2021.12.25.	
			이○○	한국예총 거창지회장		2020.12.24.~2022.12.23.	
			최○○	거창군새마을회장		2020.12.24.~2022.12.23.	
			백○○	거창한뉴스 대표		2020.12.24.~2022.12.23.	
			정○○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2019.12.26.~2021.12.25.	
			백○○	거창농산 대표		2019.12.26.~2021.12.25.	
			송○○	거창군이장자율협의회장		2019.12.26.~2021.12.25.	
			김○○	거창푸드종합센터 이사장		2019.12.26.~2021.12.25.	
		이○○	(사)거창시장번영회장		2019.12.26.~2021.12.25.		
감사		유○○	푸른산내들 이사		2019.12.26.~2021.12.25.		
		정○○	대경회계사무소		2019.12.26.~2021.12.25.		
주요기능	장학금 지급,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장학사업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0,879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7,0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자산	10,935 (자산 총액)
	예산액 ²⁾	1,465	1,587	1,562		부채	56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695	735	725		자본	10,879 ¹⁾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 12. 31.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40			911		229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1 - 118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요구이유

거창군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재위탁 하고자 함

2. 기본현황

- 사 업 명 : 거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기본방향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지원
- 수탁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직원현황 : 3명(센터장 1명, 팀원 2명)
- 설치장소 : 학교급식지원센터 내 사무실(2층)
- 위탁기간 : 2019. 7. 11. ~ 2021. 12. 31.(3년)
 - ※ 재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예산내역 : 국·도비 지원사업(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단위 : 천원)

연도	2019	2020	2021
예산액	74,000	118,600	118,600

○ 내 용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순회방문지도
-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급식영양 컨설팅
- 어린이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보급 등

3. 그간 사업현황

○ 등록기관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등록기관(개소)	26	28	28
원아수(명)	1,259	1,207	1,086

○ 순회방문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위생·안전	75	151	76
원아수(명)	0	69	26

○ 식생활교육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6월
집합교육	-	-	-
방문교육	-	220회/539명	126회/142명

4.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

- 현 위탁기관 재수탁 의향문의 : 2021. 7.
- 현 위탁기관 재수탁 의향서 제출(접수) : 2021. 8.
- 재수탁기관 운영실적 자체평가 실시 : 2021. 9.
 - 재위탁요건 및 사업수행의 적정성 전반
 - 자체평가 결과 : 평가점수91.1점 가결(60점 이상 위원회 상정)
-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021. 9.
 - 현 위탁기관 재위탁 운영기관 선정 적합 여부 심의
 - 심의의원 : 6명(공무원 2명, 민간인 4명)
 - 심의결과 : 심사점수 96점 원안가결(60점 이상 원안가결)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1. 10.
- 재위탁 협약서 체결 : 2021. 11.

5. 참고사항

- 재위탁의 필요성
 - 재위탁을 통한 사업 연속성 보장으로 맞춤형 급식소 관리·지원
 - 지역대학교 전문가 활용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운영
-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참고자료

붙임1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의안 번호	2021 - 119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대 상 : (재)거창문화재단(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976,000,000원
 - 2022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 타
2022년	843,000,000	976,000,000	976,000,000	-	-	976,000,000	

- 사업내용
 -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직원 6명, 기간제 4명) 지원
 - 문화재단 사무국 경상경비(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지원

나. 부서의견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2017년 설립이후 운영 6년차에 접어드는 거창문화재단은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및 거창국제연극제, 한마당대축제 기획·운영 업무를 비롯하여
-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들의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거창문화센터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관련법규 및 조례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제2항

4. 참고사항

- 출연금 개요 :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현황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시행일 : 2016.11.23.)

제4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설립근거	법률 :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전화번호 : 055-940-8460		
			홈페이지 : www.gccf.or.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2017. 1. 4.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1.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6명	7명	9명		
임원 (‘21. 9.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18. 07. 01. ~	
	상임이사		공백		
	비상임이사	조○○	문화관광과장		‘21. 03. 08. ~
		하○○	경남도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21. 02. 18. ~ ‘23. 02. 17.
		안○○	사)아림예술제위원회 위원장		‘21. 02. 18. ~ ‘23. 02. 17.
		이○○	한국예총거창지회 회장		‘21. 02. 18. ~ ‘23. 02. 17.
		하○○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21. 02. 18. ~ ‘23. 02. 17.
		신○○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심사위원		‘21. 02. 18. ~ ‘23. 02. 17.
		이○○	사)한국서각협회 이사		‘21. 02. 18. ~ ‘23. 02. 17.
		권○○	거창미술협회사무국 지부장		‘21. 02. 18. ~ ‘23. 02. 17.
		김○○	주)거창중앙신문 대표		‘21. 02. 18. ~ ‘23. 02. 17.
		김○○	거창문화원 이사		‘21. 02. 18. ~ ‘23. 02. 17.
		김○○	前국제로타리3590지구 사무국장		‘21. 02. 18. ~ ‘23. 02. 17.
		유○○	거창예술강사협의회 회장		‘21. 02. 18. ~ ‘23. 02. 17.
정○○		사)민족미술인협회거창지부 지부장		‘21. 02. 18. ~ ‘23. 02. 17.	
감사	정○○	대경세무회계사무소 대표		‘21. 02. 18. ~ ‘23. 02. 17.	
	정○○	재무과장		‘21. 07. 05. ~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예술단체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거창한마당대축제 및 국제연극제 기획, 운영 ·문화공연 기획 및 운영 ·문화예술관련 국가, 경상남도, 거창군의 위탁,대행,보조사업 ·그 밖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본금 (단위:백만원)		50백만원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출자 : 50백만원 출연 : 843백만원('21.)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531 (자산 총액)
	예산액 ²⁾	2,861	2,656	3,840		부채	364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2,761	2,556	3,740		자본 ¹⁾	167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655			1,676		▲ 2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안 번호	2021 - 120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2022년도 거창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거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대 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사업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나. 출연금 요구액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4,114천원

- 2022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지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22년	3,486천원	4,114천원	4,114천원			4,114천원	

※ 산출기초 : '20년 결산 보통세 34,280,189천원 × 1.2/10,000

다. 부서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3. 관련법규 및 조례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내지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4. 참고사항

- 출연기관 현황
- 기타 참고자료(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등)

참고 1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참고 2

출연기관 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02-2071-2789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2021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과견			
	80명		67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위원23, 연구원15, 관리직1, 전문직3, 사무직22, 시설직1)	13명 (위촉연구원2, 과견공무원9, 청사관리2)			
임원 (2021년 8월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백재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0.12.22. ~ 2023.12.21.			
	부이사장	이동진	서울도봉구청장	2021.2.28. ~ 2022.2.27.			
	이사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연직			
	이사	이우중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연직			
	이사	김일용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장	2021.2.28. ~ 2022.2.27.			
	이사	임재진	대전광역시 자치분권국장	2021.2.28. ~ 2022.2.27.			
	이사	신용식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2021.2.28. ~ 2022.2.27.			
	이사	박일동	경상남도 자치행정국장	2021.2.28. ~ 2022.2.27.			
	이사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2021.2.28. ~ 2022.2.27.			
	이사	이향진	경기 여주시장	2021.2.28. ~ 2022.2.27.			
	이사	백선기	경상북도 칠곡군수	2021.2.28. ~ 2022.2.27.			
	이사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21.2.28. ~ 2022.2.27.			
	감사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사	유희숙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20.2.28. ~ 2022.2.27.			
주요기능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77,237 (설립이후 2020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자산	19,680 (자산 총액)
	예산액	12,897	10,855	11,928		부채	127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0,843	8,972	10,821		자본	19,55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2,504			9,816		2,688	

참고 3

예산편성 협조 공문

인쇄 : 정성욱 / 재무과 (2021-10-01 17:26:25)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4029(2021.9.1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확정내역을 불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시군에서는 2022년도 예산편성안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년도 출연금 집계표(최종) 1부. 끝.

경 상 남 도



수신자 창원시장(세정과장), 진주시장(세무과장), 통영시장(세무과장), 사천시장(세무과장), 김해시장(세무과장), 밀양시장(세무과장), 거제시장(세무과장), 양산시장(세무과장), 의령군수(재무과장), 함안군수(세무회계과장), 창녕군수(재무과장), 고성군수(재무과장), 남해군수(재무과장), 하동군수(재정관리과장), 산청군수(재무과장), 함양군수(재무과장), 거창군수(재무과장), 함천군수(재무과장)

주무관	전지혜	세정담당	강병문	세정과장	전결 2021. 9. 23. 조현국
-----	-----	------	-----	------	------------------------

협조자

시행	세정과-13003	(2021. 9. 23.)	접수	재무과-25605	(2021. 9. 23.)
----	-----------	----------------	----	-----------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예산담당관실 (사림동) / <http://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11-3714 팩스번호 055-211-3719 / bloom1208@korea.kr / 대국민 공개

만남·모임·행사 등의 대면 모임 잠시 멈춰주세요

문서관리카드 재무과-25605 1/1

2022년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 집계표

(단위 : 천원)

자치단체명	① '20년 결산 지방세	'20년 결산 보통세			'22년 출연금			
		② 소계(a+b)	③ 현년도a	④ 과년도b	⑤ '21년 정산액	⑥ '22년 출연분 (2+1.2/10000)	⑦ '22년 출연금 (7=6+5)	
전국합계	99,972,195,750	93,004,628,294	92,931,470,445	73,157,849	2,636,716	11,160,551	13,797,267	
경남도 자치 단체	경남도 소계	5,731,860,599	5,239,388,166	5,244,428,221	-5,040,055	0	628,724	628,724
	경남도 본청	3,273,535,589	2,810,153,189	2,838,926,265	-28,773,076		337,218	337,218
	창원시	768,566,598	739,481,391	738,214,521	1,266,870		88,737	88,737
	진주시	236,377,517	236,377,517	232,147,307	4,230,210		28,365	28,365
	통영시	66,076,707	66,076,707	64,097,316	1,979,391		7,929	7,929
	사천시	85,261,553	85,261,275	88,306,970	-3,045,695		10,231	10,231
	김해시	371,798,148	371,798,148	363,624,537	8,173,611		44,615	44,615
	밀양시	103,140,545	103,140,545	102,152,933	987,612		12,377	12,377
	거제시	156,137,143	156,137,143	154,354,628	1,782,515		18,736	18,736
	양산시	315,300,775	315,296,401	311,631,224	3,665,177		37,836	37,836
	의령군	23,251,671	23,251,671	22,925,872	325,799		2,790	2,790
	함안군	71,809,600	71,809,600	69,955,292	1,854,308		8,617	8,617
	창녕군	47,427,435	47,427,435	47,075,556	351,879		5,692	5,692
	고성군	41,466,139	41,466,139	40,641,276	824,863		4,976	4,976
	남해군	26,121,248	26,121,248	25,978,909	142,339		3,135	3,135
	하동군	28,569,393	28,569,393	28,424,699	144,694		3,428	3,428
	산청군	26,278,831	26,278,831	26,300,719	-21,888		3,153	3,153
	함양군	28,653,827	28,653,827	28,369,671	284,156		3,438	3,438
거창군	34,280,189	34,280,189	33,752,157	528,032		4,114	4,114	
합천군	27,807,691	27,807,517	27,548,369	259,148		3,337	3,337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안 번호	2021 - 12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 사 업 비 : 300,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22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군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22년	250	300	300			300	

- 사업내용
- 거창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나. 부서의견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 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려 조속히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2021년 대비 5천만원을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됨
- 신용보증재단 출연 요청액은 5억원이나, 추후 거창군 소상공인의 대출 수요 변화, 경남 타시군 출연금 지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출연액 범위를 결정하고자 함.

3. 관련법규 및 조례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4. 참고사항

- 경남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지원 협조 공문

관 계 법 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연기관 현황 】

경남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화번호: 1644-2900	
					홈페이지: www.gnsinbo.or.kr	
주요연혁	1996.06.05. 경남신용보증조합 설립 2000.03.20. 경남신용보증재단 전환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1. 9.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11명		109명		2명	
임원 (‘21. 9.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前 솔로몬저축은행 대표이사			2020.11.1.~2022.10.31
	비상임 이사	이**	現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20.9.1.~
		김**	現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			2020.12.31.~
		김**	現 경남은행 창원영업본부장(상무)			2021.6.1.~2023.5.31
		정**	現 농협은행 경남영업부장			2021.6.1.~2023.5.31
		김**	現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상임이사			2021.6.1.~2023.5.31
		양**	現 경상남도 소상공인연합회장			2021.6.1.~2023.5.31
		김**	現 경남신용보증재단 노동이사			2021.3.3.~2023.3.2
	감사	장**	現 장** 회계사무소대표			2020.9.1.~2022.8.31
고문						
주요기능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자본금 (단위:백만원)		234,096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01,687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자산
	예산액	71,137	88,155	108,057		부채
	지자체 지원액	6,700	17,550	15,000		자본
					299,743 (자산 총액)	
					65,647 (부채 총액)	
					234,096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 원) '20.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7,466			43,711		△16,245

2022년도
『거창군』 출연금 지원 요청

2022년 거창군 출연금 (5억원) 지원 요청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거창군의 출연금 지원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대규모 보증공급 확대에 따른 운용배수 급증 및 재단 손실누적으로 향후 안정적 보증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거창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을 위하여 출연금 일금 5억원을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I 출연의 필요성

○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비중	전체	소상공인	소기업	비중
경남	264,301	231,336	258,222	97.7	1,125,164	464,713	806,374	71.7
거창	4,434	4,004	4,371	98.6	14,283	7,720	12,454	87.2

* 출처 : 「2021 중소기업기본통계(2019년도 사업체 수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 신용보증효과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신규보증 1억원 당	1.88억원	0.83억원	1.01명

* 출처 : 「2020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효과 분석 보고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 재단의 안정적인 운용배수 유지

-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 및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보증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운용배수 급증

* 운용배수 증가 : ('18년) 6.66배 → ('19년) 7.41배 → ('20년) 9.9배 → ('21년 결산추정) 8.9배

- 전국재단 최저 운용배수 대비 경남재단의 운용배수는 약 2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당분간 적정 운용배수(12배) 이내 운용 필요

* 경남재단 9.90배, 전국평균 9.16배, 전국최저 5.12배('20년말 기준)

○ 재단 손실 증가에 따른 기본재산 확보 필요

-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 및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보증지원으로 향후 지속적 손실 증가 예상됨에 따라 기본재산 확충의 필요성

* 손실금 증가: ('18년) △127.5억원 → ('19년) △185.9억원 → ('20년) △162.5억원 → ('21년 추정) △266억원

○ 대규모 보증공급 이후 부실 급증 사례

-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하여 「'08~'09년 대규모 특례보증 공급이 후 '12년까지 3년간」 대위변제율 지속적 증가한 사례

* 대위변제율(전국재단) : ('09년) 2.08% → ('10년) 2.83% → ('11년) 4.0% → ('12년) 4.49%

→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규모 특례보증 시행으로 향후 2~3년간 우리재단 대위변제율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II 거창군 신용보증 · 대위변제 주요현황

○ 거창군 보증공급 현황 (기한연장 포함)

- 재단 설립('96.6) 이후 거창군 소재 기업에 지원된 누적 총보증 금액은 2,044억원
- '21년 상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평년대비('18~'19년) 보증지원 증가

* 총 보증공급액 : ('18년) 212억원 → ('19년) 285억원 → ('21년 6월) 268억원

(21.6.30.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 중소기업		합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96.6월~2017년	3,946	825	2	2	3,948	827
2018년	1,068	212	-	-	1,068	212

2019년	1,239	285	-	-	1,239	285
2020년	1,600	450	5	2	1,605	452
2021년 6월말	998	267	2	1	1,000	268
합 계	8,851	2,039	9	5	8,860	2,044

○ 거창군 대위변제발생 현황

- 재단 설립('96.6) 이후 거창군 소재 기업의 누적 대위변제 금액은 47억 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증요건 완화 및 지역경기 침체로 향후 지속적인 부실 증가 우려

(‘21.6.30. 기준, 단위 : 개, 억원)

구 분	소상공인		소기업 / 중소기업		합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96.6월~2017년	233	23	1	1	234	24
2018년	43	6	-	-	43	6
2019년	38	6	-	-	38	6
2020년	39	6	-	-	39	6
2021년 6월말	19	5	-	-	19	5
합 계	372	46	1	1	373	47

Ⅲ 출연금 현황

○ 기초지자체 출연비중 저조

- 우리재단 출연금에 대한 비중을 볼 때 신용보증으로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영위하는 시·군의 출연금 비중은 9.7%로 저조한 실정

(기간 : '96.6 ~ '21.6.30, 단위 : 억원)

구 분	총 출 연 금					이월 손익금	계
	정부	경남도	시·군	금융기관	기업체 등		
금 액	557.9	852.9	318.0	1,415.8	119.7	△531.3	3,264.3
구성비	17.1%	26.1%	9.7%	43.4%	3.7%	-	100%

○ 전국 광역지자체 출연금 중 시·군 출연비중 하위수준

- 유사한 수준의 타 재단 비교에서도 우리재단의 시군 출연금 비중은 평균(20.8%) 이하의 매우 저조한 수준(7.4%)을 보이고 있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주체별 출연비중】

(기간 : '96.6 ~ '20.12.31, 단위 : 억원)

구분	총출연금	광역		시·군		기타	
		금액	%	금액	%	금액	%
경남	2,872	803	28.0%	214	7.4%	1,855	64.6%

【전국 광역지자체재단 출연추제별 출연비중】

(기간 : 설립일 ~ '20.12.31, 단위 : 억원)

구분	총출연금	광역		시·군		기타	
		금액	%	금액	%	금액	%
강원	2,004	782	39.0%	74	3.7%	1,148	57.3%
경기	14,340	3,528	24.6%	3,977	27.7%	6,835	47.7%
경북	2,755	586	21.3%	721	26.2%	1,448	52.5%
전남	2,162	675	31.2%	144	6.7%	1,343	62.1%
전북	2,225	660	29.7%	272	12.2%	1,293	58.1%
충남	2,634	614	23.3%	360	13.7%	1,660	63.0%
충북	1,730	329	19.0%	239	13.8%	1,162	67.2%
합계	27,850	7,174	25.8%	5,787	20.8%	14,889	49.3%

○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운영

- '22년 출연금은 설립이후 보증공급, 보증잔액 및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금의 합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필요금액을 산정한 것이며, '22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출연금의 12배 이내에서 운영가능
-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운영금액 : 5억원 * 12배 = 60억 이내

붙임 1

2022년 거창군 출연금 산출 근거

○ 출연금액 산출

- 지역별 2019년 보증잔액 증가액의 최소출연배수(15배수) 금액과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금 합계액에서 도 출연금액을 지역별로 안분 차감하여 각 기초단체별 출연금 산정

○ 거창군 출연산정 참조자료

(단위 : 백만원)

지역	보증잔액 증가액			대위변제 순증	출연 필요금액			안분차감		2022년 최종 출연금 산출 출연금 (E)	2021.6.30. 기준 참고 자료		
	2019년 (A)	2020년 잔액 (B)	증감 (C)(B-A)		2020년 (D)	잔액증가 법정비율 (C/15배)	대위변제 (재보증제외) (Dx50%)	소계	경남도 출연		산출 출연금	시군별 누적 출연금	보증잔액
합 계	1,484,375	2,316,403	832,028	32,279	55,460	16,135	71,603	5,000	66,603	16,850	31,800	2,316,299	279,496
거창군	32,834	49,456	16,622	414	1,108	207	1,315	92	1,223	500	1,100	48,343	3,413

※ 2020년 코로나 19 사태로 보증잔액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였으나,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전년(2019년 자료에 따른 요청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출연금 요청

- 1) 시·군별 실제출연금 산출은 '20년 기준으로 '19년 대비 증가한 보증잔액에 신용보증재단법상의 법정비율(15배)과 대위변제 발생액의 재보증(50%)을 고려한 금액에 경상남도 출연금(50억원)의 지역별 안분 차감한 값으로 산출함.
- 2) 경상남도 총 출금은 90억원이나 40억원은 지정(특례보증 시행을 위한 재원) 출연금으로, 시·군별 안분 차감은 지정 출연금 제외한 50억원을 적용함.
- 3) '22년 출금은 지역별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 발생에 따른 필요금액을 산출한 것이며, '22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출연금의 12배 범위 내에서 운영가능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2021 - 122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거창군 출연기관으로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은 실험생산을 진행하며 특화제품개발 및 각종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실험생산 공장으로서
- 대상지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무상사용하여 왔음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개요(건물)

- 위 치 :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22번지
- 건물면적 : 392m²
- 소 유 자 : 거창군
- 사 업 비 : 451백만원(기계설비 309, 건축물 138, 부대시설 등 4)
- 사용·수익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 ※ 토 지 : 개인 토지(5,500천원/년, 소유주 : 진산 김치성)

나.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세부내역

- ◎ 사용료 감면(면제) : 5,782,622원
- 건 물 : 115,640,000원(시가표준액)
- 기계설비 : 12,447원
(최초 거래가격 309,000,000원 × 13년 경과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적용)
- 사용료 산출 : 115,652,447원 × 50/1,000(요율) = 5,782,622원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다. 추진경과

- 2008. 1. ~ 2021. 12. 31. 무상사용
- 2021. 10. : 재산관리관(미래전략과) 협의

라. 향후계획

- 2021. 12.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서 사용허가 신청
- 2021. 12. : 사용허가(재산보존 책임, 원상태로 반환 등)
- 2022. 1. 1. ~ 2024. 12. 31. : 3년간 무상사용

마. 기대효과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연구에 필요한 친환경기능석재공장을 무상사용하여 거창화강석만의 차별화·고부가가치화 제품의 연구·개발에 매진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31조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 제15조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

4. 참고사항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1
- 관계법령 : 붙임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사진설명 : 위천면 남산리 105-22번지



사진설명 : 위천면 남산리 105-22번지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3. 제1호(토지) 및 제2호(주택)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톤수별·형식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5조(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수익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방법
3.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4.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5. 허가조건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7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 사용·수익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수익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5.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의안 번호	2021 - 123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2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2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2021년 예산액	2022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 타
2022년	180	280	280			280	

※ 2021년 출연금 180백만원(2021년 대비 100백만원 증액)

- 사업내용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인건비 지원 등 : 200백만원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석재압축강도 시험기 구입 : 80백만원

나. 예산증액사유

- 거창 석재산업 발전의 중추기능을 맡고 있는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연구업무 직원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 2008년 최초 구매 이후 내구연한(10년) 경과 및 사용빈도 증가로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구입하여 지원함이 필요

3. 관련법규 및 조례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1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2

관 계 법 령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4조 (운영 등)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 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 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

-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거창화강석연구센터 현황)

I 연구센터 일반현황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연구센터 현황

- 법인명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 거창군수)
- 법인허가(설립등기) : '07. 1. 31.(자본금 : 10백만원(거창군 출연))
- 임원현황 : 이사장 외 14명 (이사 10, 감사 2, 간사 1, 고문 1)
- 직원현황 : 총 6명(센터장 1, 연구직 3, 생산직 2)

II 거창화강석 산업현황

□ 석재산업 현황

○ 채석 및 가공업체 현황

- ▶ 종사인구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음

(물류, 유류, 기계, 공구 등 지역경제에 재투자 비율이 높음)

(단위 : 개소 / 명 / 백만원)

구 분	계	석산협회	석재조합
업체수	34	12 (원석 11, 골재 1)	22 (회원 18, 비회원 4)
종사자수	203	101	102
매출액 (2020년)	56,845	30,682	26,163
농가조수익 (2020)	쌀(51,031), 사과(97,773), 딸기(39,333), 한우(123,379)		

※ 비회원사(수가공), 유통업, 중간소매, 석시공 등은 매출액 제외

○ 석재 관급시장 연간 매출 규모(조달청)

- ▶ 관급시장규모 대비 거창지역 매출규모는 동일 수준을 유지 중임
(원석, 인건비, 유류비, 물류비 등 부대비용의 증가로 내부 수익성은 악화)

(단위 : 백만원)

관급시장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 국	314,004	338,487	384,960	374,732	371,758	380,103
거 창	38,870	40,652	38,200	44,364	38,971	38,390
거창매출규모	12%	12%	10%	12%	10%	10%

※ 관급계약 매출액 기준으로 사급 및 기타 석제품은 제외

Ⅲ

연구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성과

□ 2021년도 성과목표 및 현 실적

구 분		'21년도 성과 목표	'21년도 실적 (9월말)
기업지원 (석산/가공)	기업애로사항 지원	20건	16건
	기업샘플/시제품 제작	20건	55건
	원산지 검증 지원	5건	1건
	석재 시험분석 지원	500건	530건
	채석/사면 평가 지원	4건	3건
	석재 대외업무 지원	20건	8건
	홍보 마케팅 지원	10건	2건
학술연구용역	한라산 모니터링 외	5건	6건
연구개발	기술개발 및 제품화	2건	4건
경영수익	공인시험기관 운영	200,000천원	183,826천원
	채석/사면 평가 지원	70,400천원	35,200천원
	학술연구용역	129,600천원	83,466천원
	기타 수익금	-	5,771천원
	합 계	400,000천원	308,263천원

□ 주요업무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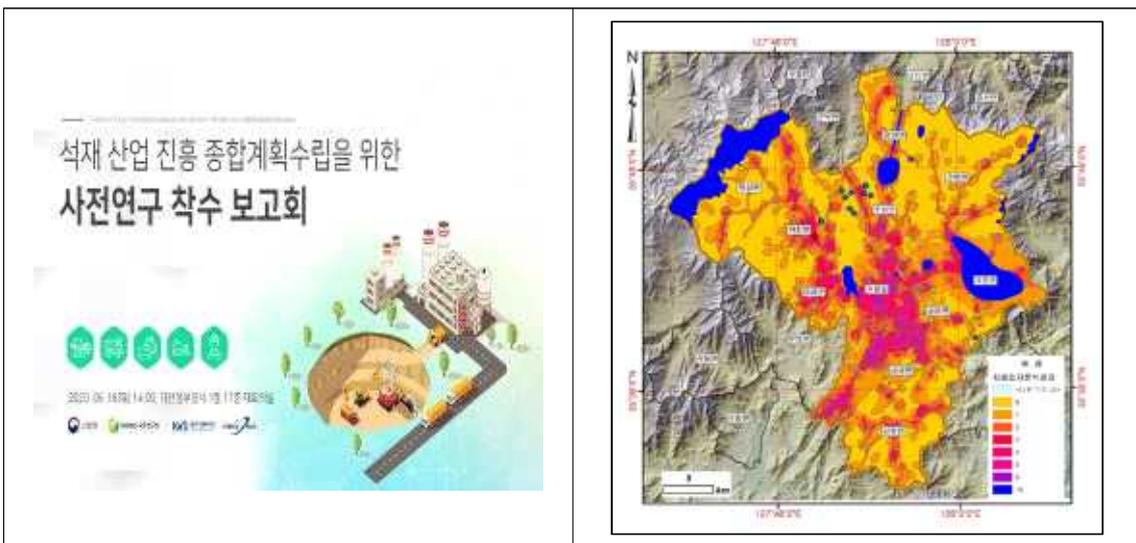
○ 석재관련 기업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 ▶ 라돈, 석면 등 유해성 분석을 통한 거창화강석 품질우수성 확보
- ▶ 석재가공부산물 재활용 방안 및 유해성 분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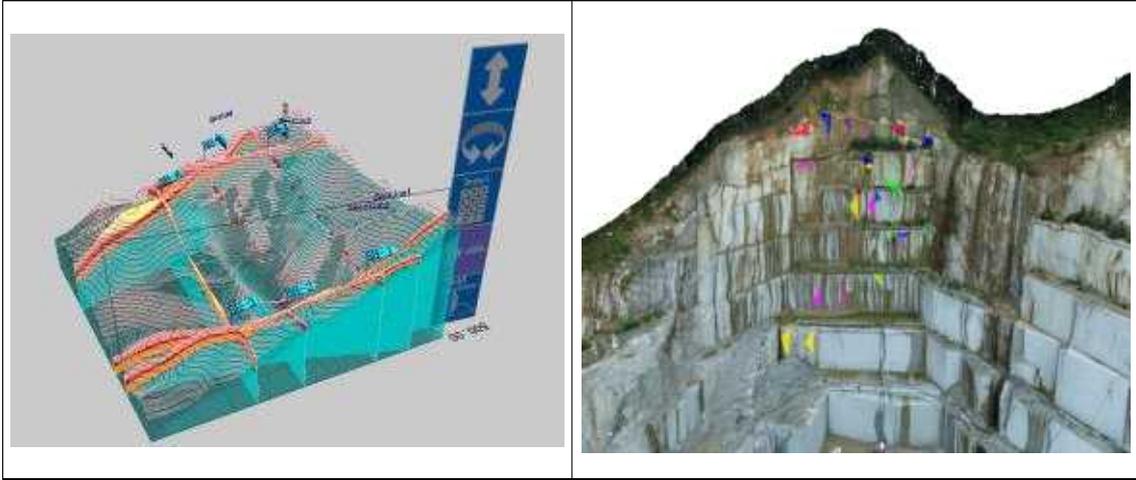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및 관련업무 추진

- ▶ 석재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업무 지원 및 참여
- ▶ 거창화강석 산업을 대상으로 한 “석재산업진흥지구 기초연구”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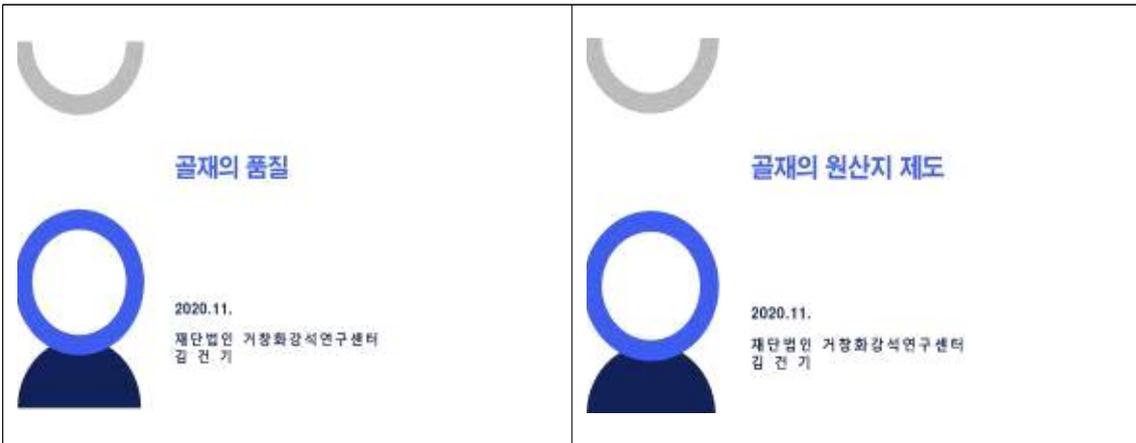
○ 거창지역 원석확보를 위한 석산인허가 업무지원

- ▶ 석산 인허가 관련 현황 분석 및 개발방향 업무협의
- ▶ 토석채취 허가를 위한 평가 분석 지원 등



○ 공공·민간부문 학술연구용역 수행

- ▶ ‘석재 및 골재자원 종합관리계획 수립’ 관련 업무지원
- ▶ 국토교통부 골재자원조사/골재 불소 발생평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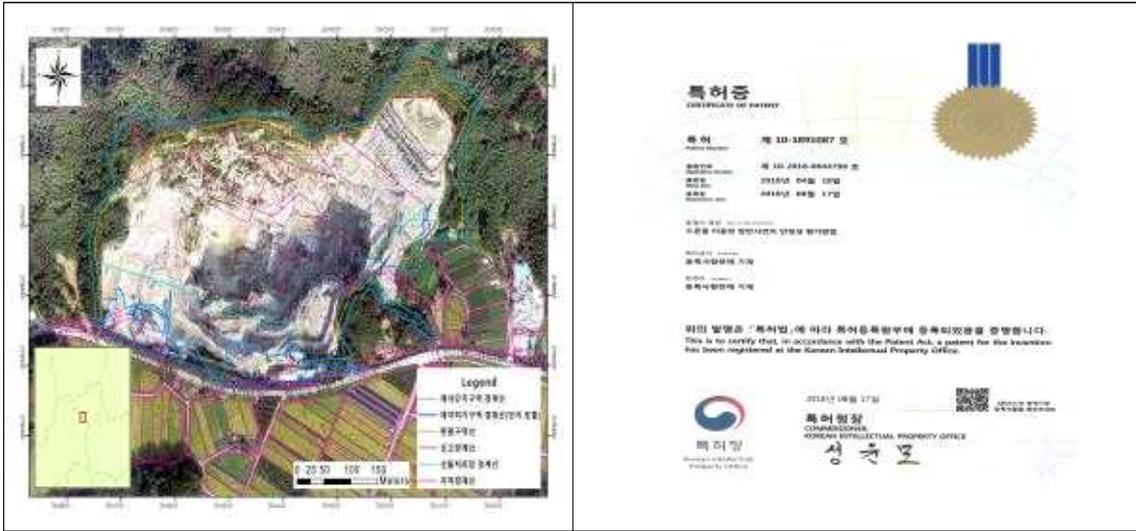


○ 석재품질평가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확대

- ▶ 거창화강석 품질기준 마련 → 석재 원산지 검증 기술개발
- ▶ 관세청, 조달청,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원산지 검증 활동

○ 채석 경제성 및 사면 안정성 평가 시스템 구축

- ▶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채석 경제성 및 사면 안정성 평가 지원
- ▶ 개발 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특허 1건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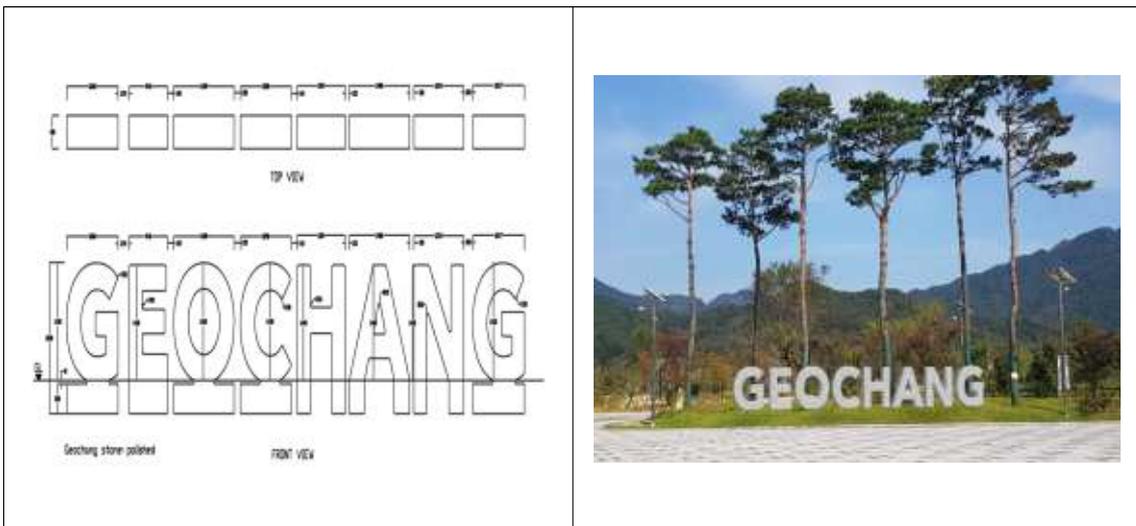


○ 석재가공 방법 및 표면처리 기술개발

- ▶ 폐자재를 이용한 사고석 제조 및 가공방법
- ▶ 자동 톱다듬을 이용한 빗살무늬 판석 제조 및 가공방법

○ 지역 관광자원 및 기업 매출증대 기여

- ▶ 거창화강석 활용 조형 및 시설물 제품디자인 4종 개발
- ▶ 창포원 설치를 통한 대외 관심도 증대 및 지역 관광자원 확보
- ▶ 거창화강석 활용에 따른 관내 기업 약 95백만원 수익창출



□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성과

○ 거창 친환경 석재 융복합 산업화

- ▶ 추진대상 : 거창군, 거창석산협회, 거창석재조합(주), 연구센터
- ▶ 원자재 및 가공 생산기반시설 지원 등 : 528백만원(2020년도)
- ▶ 토석채취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 수가공 → 자동화 설비지원



○ 2021년도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국비확보

- ▶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 종사자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한 재정확보 및 관련기업 업무지원
- ▶ 석재 채취업 10개 업체 총 385백만원 국비 확보
- ▶ 석재 가공업 7개 업체 128백만원 국비 확보

○ 공인시험분석 서비스 및 석재 원산지 검증활동 지원

- ▶ 거창 관내 32개 업체 시험수수료 50% 할인 및 우선지원
- ▶ 석재시험분석(398건), 골재시험분석(207건) 지원
- ▶ 국내 유일의 석재 원산지 검증기관 → 거창화강석 사용 유도
- ▶ 원산지 검증에 따른 효과 : 거창화강석 보호 및 업체 매출 증대
- ▶ 울산지역 관급 물량에 대한 관내업체 계약이 약 77% 정도 체결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7	2018	2019	2020
울산전체 관급물량	1,819	2,963	3,223	2,958	2,482
울산지역 "ㄷ"석재	1,114	8	6	-	-
거창지역 관내업체	520	2,470	2,221	1,813	1,918
타 지역 석재업체	202	485	1,005	1,145	564
합 계	1,836	2,067	2,963	3,223	2,958

○ 거창화강석 기술개발 및 상용화 실적(2020년 12,574백만원 매출)

- ▶ 가공조경석 형상평가 기술개발 및 규격화 : 12,227백만원
- ▶ 폐자재를 활용한 굴림보도판석 개발 : 202백만원
- ▶ 성곽석 제조 및 가공기술 개발 : 50백만원
- ▶ 조형물, 열주, 벤치, 앉음벽 등 제품 개발 : 95백만원
- ▶ 미끄럼 방지를 위한 무광택 판재 품질기준 마련
- ▶ 가공용 톱을 이용한 빗살무늬 판석 제조방법 및 제품 개발

○ 기업지원을 통한 제품화 실적

- ▶ 지원업체명 : 스톤 아이 앤 에스
- ▶ 지원내용 : 교통안전경계석 제품 디자인 및 개발, 품질분석 및 컨설팅, 중소벤처기업부 벤처나라 등록(2020. 12. 14) 지원 등
- ▶ 매출실적 : 포항시 외 7개소 총 32,450천원(2021. 9월말 기준)

거창 한들교 회전교차로 설치전경	
주간	
야간	

□ **석분슬러지 처리 및 재활용 지원**

○ 석분슬러지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유해성 분석지원

- ▶ 석재 가공시 발생하는 석분슬러지의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
- ▶ 석분슬러지 관련 각종 시험, 분석업무 등 기업지원 및 애로사항해결
- ▶ 석분슬러지 유해성 분석 ⇒ 관내 업체 유해성 분석지원

구 분	대 상	구 분	대 상
토양오염공정시험	17개 업체 지원	토양용출시험	5개 업체 지원

□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 활용

연구개발 추진내용	실적 및 성과	기업체 공동개발 및 기술지원	연구센터 수익사업 기업체공동기술개발
석제품질 평가	석재원산지 검증/판별방법	석재원산지검증 조달청원산지검증	원산지검증수수료
	국제공인시험 기관인정	거창업체(50%할인) 시험분석지원	거창지역/전국 시험분석 수수료
	단체표준 시험기관지정	전국석재관련업체 시험분석 지원	가공조경석형상평가 기술개발용역수행 (특허1건등록/2건출원)
급경사지 안정성평가 기술개발	급경사지안정성 평가분석	사면안정성평가/보강 (3개업체 지원)	거창 및 타 지역 사면안정성평가
	사면안정성평가 시스템 구축	석산인허가관련지원 석산 환경재해평가 및 사면분석 지원	드론을 이용한 사면 평가/지형변화 특허2건출원 준비중
석분슬러지 광물자원화	석분슬러지 유해성 분석	폐기물유해성평가 업무지원(24개업체)	재활용관련기술 (세라믹기술연구원)
	석분재활용 가능성 평가	폐기물 투수/다짐 시험분석지원 폐기물관련법 개정(석산복구사용)	석분활용방안 (도시건축과 연계, 특허 1건 출원)
문화관광 콘텐츠개발	디자인/실용화 제품	석재활용제품개발 (기업체 공동개발)	기업체 공동기술 개발 (특허1건출원 준비중) 컬링스톤 상용화
	CNC 장비활용 개발	CNC 장비 활용 가공제품제작지원	
석재표면 처리기술 개발	컬러석재 제조방법	컬러석재 시제품	기업체 공동기술 개발 (특허 3건 출원) 한영대리석 사고석 모동석재 표면처리 (혼드, 브러쉬 등)
	석재표면 처리방법	샘플제작/납품 석재표면처리기술 (기업체공동개발)	

IV**연구센터 향후 운영계획****□ 석재산업 추진방향**

- 석재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거창 화강석 산업 중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산림청)을 기초로 하여 기본계획 수립-거창화강석 산업발전 기반조성-산업지원 및 육성의 단계별 추진

□ 주요 추진사업

- 거창화강석 산업발전 방향 검토
 - 사업목적 : 거창화강석 산업지원 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자료 확보
 - 사업내용 : 산업대분류상 거창화강석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지역경제 기여효과 정량적 분석 및 거창화강석 산업발전 방향 검토

- 거창화강석 정밀 매장량 평가 지원
 - 사업목적 : 양질의 석재확보 및 원석공급 부족해결 지원
 - 사업내용 : 시추조사 및 과학적 평가방법을 통해 가용가능 원석 확보를 위한 정밀 매장량 평가 지원
 - ※ 매장량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거창화강석 산업진흥지구 지정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조달전문검사기관 지정 추진
 - 사업목적 : 조달전문검사제도 시행에 따른 품질검사서비스 지원
 - 사업내용 :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조달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관급시장 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확대 기회 지원

- 거창화강석 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
 - 사업목적 : 거창화강석 산업진흥 도모를 위한 재정지원 확보
 - 사업내용 : 채석지구(골재 포함) 2개소, 가공 및 연구지구 1개소 지정 신청

□ 기대효과

- 지역에서 차지하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중요성 인식 제고
- 원활한 원석공급으로 거창화강석 산업 활동의 연속성 보장
- 채석부터 가공까지 거창화강석 산업의 원스톱 종합지원 체계 완성
-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석재산업을 선도하는 거창군 위상 및 거창화강석 산업 중흥 기대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전화번호 : 055-943-3924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홈페이지 : granite.re.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1.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6명		6명	0명			
임원 ('21. 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거창군청(거창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최○○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비상임이사	이○○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최○○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조○○	거창석재조합(주) 대표	"			
		김○○	거창석산협회장	"			
		김○○	거창군청(미래전략과장)	"			
		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19. 3. 21. ~ '22. 3. 20.			
		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19. 3. 21. ~ '22. 3. 20.			
	감사	임○○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19. 3. 21. ~ '22. 3. 20.			
		강○○	거창군청(산림과장)	당연직			
	고문	변○○	변법식변호사사무소 대표	'19. 3. 21. ~ '22. 3. 20.			
강○○		모동기업사 대표	-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8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자산	450 (자산 총액)
	예산액 ²⁾	733	806	887		부채	11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180	180	180		자본 ¹⁾	439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83			244		122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 위 항목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처리

